

계속감사기간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이명곤* / 장석진** / 조한석***

I. 서론	IV. 실증분석결과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V. 결론
III. 연구 설계	

개요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 간의 경제적 유착이 제기되면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 간의 경제적 유착방지를 위해 감사인 교체제도가 도입되었다. 감사인 교체제도는 계속감사를 통한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2010년 2월에 개정된 상장회사 표준의 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동일 감사인을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감사투입시간을 살펴봄으로써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업무의 효율화가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감사투입시간에 대한 보상인 감사보수가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연구결과 계속감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보수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초도감사보수할인(Low Balling)으로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사인이 계속감사로 인한 적격성 즉, 감사품질의 향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유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감사투입시간이라는 직접적인 측정치를 사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계속감사로 감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주저자), E-mail : leemg@hanyang.ac.kr

** 한양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공동저자), E-mail : seokjin3@hanyang.ac.kr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공동저자), E-mail : hanseokcho@hanyang.ac.kr

투고일(2011년 1월 21일), 1차수정일(2011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2011년 3월 14일)

는 감사인 교체제도 폐지의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업무의 효율화가 감사보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후속연구들과 관련정책을 결정하는 정부기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계속감사기간,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인 교체제도

I. 서론

엔론(Enron) 및 월드컴(WorldCom) 등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 간 경제적 유착이 제기되면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미국에서는 Sarbanes-Oxley Act(이하 ‘SOX’)가 제정됨으로서 감사인의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비감사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감사인 유지제도와 감사인 교체제도가 도입되었다. 감사인 유지제도는 자유수입제도 하에서 감사인의 교체압력을 감소시켜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사인 교체제도는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 간 경제적 유착방지를 위해 제정되었다. 감사인 교체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와 감사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계속감사를 통한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2월에 개정된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s)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동일 감사인을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감사투입시간을 살펴봄으로써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업무의 효율화가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감사투입시간에 대한 보상인 감사보수가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감사보수의 경우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사투입시간의 감소로 인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은 자유수입제도 하에서 초도감사보수할인(Low Balling)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imons 2007; 박종성 등 2010).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감사기간과 비례하여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축적이 증가한 결과로 감사인의 적격성 즉,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면 감사보수가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보수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구결과 계속감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보수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초도감사보수할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사인이 계속감사로 인한 적격성 즉, 감사품질의 향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유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감사투입시간이라는 직접적인 측정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계속감사로 감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인 교체제도 폐지의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감사를 주제로 수행된 많은 선행연구들은 계속감사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계속감사를 통한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계속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업무의 효율화가 감사보수의 인하 방향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후속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인 유지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감사인의 감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가. 감사인 교체제도와 감사인 유지제도

미국의 엔론 사태와 우리나라의 대우 사건 등의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 간의 경제적 유착이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의 결합확률로 정의된다. 따라서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 간의 경제적 유착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켜 감사품질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많은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SOX가 제정되었고 국내에서는 감사인 유지제도, 감사인 교체제도

등이 입법화되었다.

감사인 유지제도는 동일 감사인이 일정기간 동안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감사인 유지제도는 자유수임제도 하에서 감사인이 교체압력에 위협받지 않고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동일 감사인이 일정기간 동안 감사업무를 수행하면,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고 효율적인 감사의 수행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감사인 유지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일정 수준의 감사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은 주권상장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이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

동일 감사인이 동일 감사대상기업에 대해 장기간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 간 경제적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유착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3년 12월 외감법에 감사인 교체제도가 도입되었다. 감사인 교체제도에 따라 주권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은 동일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감사인 교체제도는 상장기업이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동일 감사인 선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감사인 유지제도와 감사인 교체제도는 계속감사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라 볼 수 있다. 즉,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인 유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감사인 교체제도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감사인 교체제도의 문제점

상장법인은 2010년 2월에 개정된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동일 감사인을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주권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은 감사인 교체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감사인 교체제도가 폐지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감사인 교체제도는 감사업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에 도입된 국

1) 감사인 유지제도는 1996년 12월에 입법화되었다.

제회계기준은 과거의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과거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아닌 감사대상기업과 감사대상기업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고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즉, 과거에 비해 감사업무가 매우 복잡해지고, 감사인의 전문적 지식과 전문가적 판단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대상기업의 영업 및 경영활동에 대한 축적된 이해를 가진 감사인일수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즉, 동일 감사인의 동일 감사대상기업에 대해 계속감사가 허용된다면, 감사인의 해당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높아지고 감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감사인 교체제도는 새로운 감사인의 교체에 따른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감사대상기업이 감사인 교체제도에 따라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경영진, 감사위원회 등은 감사인 선임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감사인의 경우 새로운 감사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활동과 초도감사보수할인 등을 부담해야 하며, 새로운 감사대상기업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감사대상기업이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면 감사인의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이해도 감소로 인한 감사품질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감사실패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셋째, 감사인 교체제도는 자유수임제도 하에서 회계법인 간의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자유수임제도 하에서 회계법인은 감사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감사보수할인 등과 같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사인 교체제도는 감사인이 주기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회계법인 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사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감사인의 노력이 새로운 고객의 유치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서 감사품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상장기업은 동일 감사인을 6년 이상 선임할 수 있도록 감사인 교체제도가 폐지되었다. 감사인 교체제도의 폐지는 연결재무제표의 감사, 업무의 복잡화 등으로 감사업무에서 감사인의 전문성과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감사인 교체제도는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의 경제적 유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감사품질 측면에서 감사인 교체제도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들은 계속감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계속감사를 통한 감사업무의 효율화가 발생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

로써 감사인 교체제도 폐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감사인 교체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 검토

DeAngelo(1981)는 감사품질을 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의 회계시스템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항을 발견할 확률과 발견사항을 보고할 확률의 결합확률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감사품질은 감사대상기업의 부정과 오류를 발견하려는 감사인의 적격성과 부정과 오류를 보고하려는 감사인의 독립성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를 주제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인의 적격성이 향상됨으로서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연구들이다. 둘째,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됨으로서 감사품질이 낮아진다는 연구들이다.

가. 계속감사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계속감사기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영덕(2006)은 감사인 교체제도의 도입에 맞춰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임영덕(2006)은 재량적 발생액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하고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계속감사기간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속감사의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Johnstone et al.(2001)은 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면, 분식회계를 발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초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이 제안한 회계처리를 받아들이고, 다른 가능한 회계처리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Johnson et al.(2002)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작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계속감사를 통해 감사품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Geiger and Raghunandan(2002)은 계속감사기간과 감사인의 도산직전년도에 표명된 계속기업가정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의견(A Going Concern Opinion)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속감사기간이 짧을수록 도산직전년도에 계속기업가정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eiger and Raghunandan(2002)은 계속감사기간이 짧을수록 감사품질이 저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Myers et al.(2002)은 계속감사기간이 1~2년, 3~4년, 5년 이상을 기준으로 표본을 분류하고 각 그룹 간 발생액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품질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계속감사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발생액의 평균과 중위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yers et al.(2002)은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Ghosh and Moon(2005)은 이익반응계수를 자본시장이 평가하는 감사품질이라고 정의하고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이익반응계수가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계속감사기간과 이익반응계수는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Ghosh and Moon(2005)은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본시장이 감사품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Gul et al.(2007)은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비감사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짧을수록 비감사보수와 감사품질은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비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Gul et al.(2007)은 계속감사기간이 짧을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됨으로서 감사품질이 낮아진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Gul et al.(2007)은 감사인 교체제도를 반박하는 연구로 볼 수 있다. Gul et al.(2007)은 감사인의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감사보수가 아닌 비감사보수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감사인 독립성을 주제로 수행되는 차후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 관 등(2010)은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본시장이 감사대상기업의 이익의 질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는 계속감사기간이 7년 이상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더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성 향상이 감사품질의 향상으로 나타난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감사인이 새로운 감사대상기업과 감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보비대칭이 해소됨으로서 감사인이 높은 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계속감사의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반대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됨으로서 감사품질이 낮아진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Davis et al.(2000)은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계속감사기간과 재량적 발생액은 양(+)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경영자는 자신의 재량권을 사용해 이익조정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DeFond and Subramanyam(1998)은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을 대상으로 교체연도와 교체직전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이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인을 교체한 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이 직전연도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특히, 소송위험이 높은 감사대상기업에서 감사인 교체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이 더 작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DeFond and Subramanyam(1998)은 감사인 교체가 감사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박종성 등(2003)은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과 감리지적유무를 사용하여 계속감사에 따른 감사품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재량적 발생액과 감리지적유무는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박종성 등(2003)은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은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계속감사기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감사품질이 저하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주장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련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 본 연구와 기존연구와의 차이

위의 선행연구들은 외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계속감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재량적 발생액이나 계속기업가정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의견 등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의 대용치와 계속감사기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감사인 측면에서 계속감사를 논의하고자 한다.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다면, 감사인이 부정과 오류를 발견할 감사능력 즉, 감사품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감사품질의 향상으로

감사인의 감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은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련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계속감사를 통한 감사업무의 효율화에 대해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계속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감사인 측면에서 계속감사를 살펴본 연구도 존재한다. Bedard and Johnstone(2010)은 동일 회계법인 내 이사(Partner)의 계속감사기간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사의 계속감사기간은 감사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사의 계속감사기간은 감사보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dard and Johnstone(2010)은 회계법인의 계속감사기간이 아니라 감사업무를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사의 계속감사기간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Bedard and Johnstone(2010)과 동일하게 감사인 측면에서 계속감사를 통한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사의 계속감사기간이 아닌 회계법인의 계속감사기간을 사용한다.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업무의 효율화는 이사뿐만 아니라 보조자의 업무에서도 발생할 것이다.²⁾ 따라서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계속감사기간이 아닌 회계법인의 계속감사기간을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³⁾

Ⅲ. 연구 설계

1. 가설설정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감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업무를 실시한다. 감사계획은 전반감사계획과 세부감사계획으로 구분된다. 감사인은 전반감사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감사대상기업의 개별적인 업무흐름, 내부통제제도, 조직구조

2) 외감법은 동일 회계법인 내의 동일한 이사가 상장기업에 대해 4년 연속 계속감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의 계속감사기간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할 경우 계속감사기간의 최대값을 3으로 제한함으로써 계속감사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동일 회계법인 내에서 이사 및 보조자의 교체로 인해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업무의 효율화가 저하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및 보조자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동일 회계법인 내에서 교육, 대화 등을 통해 지식의 전이가 발생함으로써 감사업무의 효율성이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분석함에 있어 회계법인의 계속감사기간을 사용한다.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한다. 또한 감사인은 세부감사계획의 수립을 통해 전반감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세부적인 개별 계정과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한다.

감사인이 새로운 감사대상기업과 감사계약을 체결하면, 감사인과 해당 감사대상기업 간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정태범 등 2008). 구체적으로 초도감사 시에 감사인은 전반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감사대상기업의 개별적인 업무흐름, 내부통제제도, 조직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감사인은 계속감사 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뿐만 아니라 해당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에 필요한 시간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일정기간동안 감사인이 계속감사를 수행하면 감사초기에 존재하는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 간의 정보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다. 즉, 일정기간 계속감사의 수행으로 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게 됨으로서 감사대상기업을 이해하는데 별도의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진다(Ghosh and Moon 2005). 뿐만 아니라 감사인은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학습효과(Learning Effect)가 발생함으로써 동일한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감소할 것이다.⁴⁾ 따라서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는 보다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감사투입시간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계속감사의 수행으로 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다면, 감사대상기업의 부정과 오류를 발견하는 감사인의 감사능력 즉, 감사품질이 향상될 것이다(임영덕 2006). 계속감사로 인해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면, 감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업무의 효율화는 감사투입시간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가설 1을 단측검증의 대립가설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감사인의 동일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투입시간은 감소할 것이다.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보수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감사보수는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감사업무의 효율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보수는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감사투입시간과 양(+)

4) 본 논문에 언급된 학습효과란 감사인이 동일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됨에 따른 감사업무에 투입된 감사시간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의 관련성을 가진다(박종일과 박찬웅 2007). 앞에서 설정한 가설 1과 같이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사투입시간이 감소한다면 감사보수도 동일하게 감소할 것이다. 즉,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보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보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계속감사의 수행으로 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다면, 감사대상기업의 부정과 오류를 발견할 감사능력이 향상될 것이다(Bedard and Johnstone 2010). 이를 바탕으로 감사인은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감사대상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계속감사기간과 비례하여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면 감사보수가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즉, 감사인은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품질의 향상에 대한 대가로써 감사보수를 감사대상기업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회계법인은 감사인 교체제도에 의해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는 기업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자유수입제도로 회계법인 간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사인 교체제도는 회계법인 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정태범 등 2008). 즉, 회계법인은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는 기업을 새로운 감사대상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는 과도한 초도감사보수할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감사인 입장에서 과도한 감사보수의 할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초도감사보수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감사인은 계속감사기간 동안 감사품질의 향상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보수를 청구할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계속감사기간 동안 감사품질이 향상된 상황에서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증가를 통해 초도감사보수할인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려는 유인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논리를 종합해보면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보수는 감사투입시간의 감소로 인해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감사품질의 향상으로 감사보수가 계속감사기간동안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는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감사보수에 대한 가설 2를 다음과 같이 양측검증의 대립가설로 설정한다.

가설 2: 동일 감사인의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보수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감사시간 혹은 감사보수와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설정한다(Ghoch and Pawlewicz 2009; Bedard and Johnstone 2010; 박종일과 박찬웅 2007).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 (1)과 모형 (2)를 설정한다.

$$\begin{aligned}
 AHOUR_{i,t} = & \beta_0 + \beta_1TENURE_{i,t} + \beta_2SIZE_{i,t} + \beta_3BIG4_{i,t} + \beta_4CONFM_{i,t} \\
 & + \beta_5INVREC_{i,t} + \beta_6EXPT_{i,t} + \beta_7ISSUE_{i,t} + \beta_8LIQ_{i,t} + \beta_9LEV_{i,t} \\
 & + \beta_{10}OPN_{i,t-1} + \beta_{11}ROA_{i,t} + \beta_{12}LOSS_{i,t} + \beta_{13}GRW_{i,t} + \beta_{14}FIRST_{i,t} \\
 & + \beta_{15}LARGE_{i,t} + \beta_{16}FORN_{i,t} + \sum p_i IND_i + \sum q_i YR_i \\
 & + \varepsilon_{i,t}
 \end{aligned}
 \tag{1}$$

$$\begin{aligned}
 AFEE_{i,t} = & \beta_0 + \beta_1TENURE_{i,t} + \beta_2SIZE_{i,t-1} + \beta_3BIG4_{i,t} + \beta_4CONFM_{i,t} \\
 & + \beta_5INVREC_{i,t-1} + \beta_6EXPT_{i,t-1} + \beta_7ISSUE_{i,t-1} + \beta_8LIQ_{i,t-1} \\
 & + \beta_9LEV_{i,t-1} + \beta_{10}OPN_{i,t-1} + \beta_{11}ROA_{i,t-1} + \beta_{12}LOSS_{i,t-1} + \beta_{13}GRW_{i,t-1} + \beta_{14}FIRST_{i,t} \\
 & + \beta_{15}LARGE_{i,t} + \beta_{16}FORN_{i,t} + \sum p_i IND_i + \sum q_i YR_i \\
 & + \varepsilon_{i,t}
 \end{aligned}
 \tag{2}$$

- AHOUR* :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 AFEE* :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 TENURE* :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연도) 자연로그 값
- SIZE* : 감사대상기업의 총자산 자연로그 값
- BIG4* : 감사인이 BIG4면 1, 아니면 0
- CONFM* : 연결자회사 수의 제곱근 값
- INVREC* :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EXPT* : 총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 ISSUE* : 주식 및 사채 발행 조달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LIQ* : 유동비율
- LEV* : 부채비율
- OPN* : 적정한 감사의견이면 0, 아니면 1
- ROA* : 총자산이익율
- LOSS* : 손실발생 기업이면 1, 아니면 0
- GRW* : 매출액의 성장률
- FIRST* : 초도감사기업이면 1, 아니면 0
- LARGE* : 대주주1인 지분율
- FORN* : 외국인지분율
- IND* : 한국산업분류기준 중분류 산업코드로 선정한 산업별 더미
- YR* : 연도별 더미

모형 (1)은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감사시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고, 모형 (2)는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감사보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다.⁵⁾ 모형 (1)과 모형 (2)에서 계속감사기간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정의하고 가설을 검증한다. 모형 (1)에서 계속감사기간을 의미하는 TENURE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다면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시간이 감소한다는 가설 1이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감사보수의 경우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과 감소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모형 (2)에서 TENURE의 예측부호를 설정하지 않는다.

TENURE를 제외한 모형 (1)과 모형 (2)의 통제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대상기업의 규모는 감사투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Ghoch and Pawlewicz 2009; Bedard and Johnstone 2010). 박종일과 박찬웅(2007)은 감사대상기업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감사대상기업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SIZE는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추가한다.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차별화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대규모 감사인은 소규모 감사인과 비교해 감사의견 표명의 합리적 확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현미와 문상혁 2006). 따라서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투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BIG4 회귀계수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자회사의 수를 의미하는 CONFM과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EXPT는 감사대상기업 영업내용의 복잡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변수로 추가하였다. 또한 CONFM은 감사대상기업 영업내용의 복잡성 외에도 연결재무제표 감사로 인한 감사투입의 증가를 통제한다. 감사대상기업의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증가할수록 실사, 조회 및 확인을 더 많이 필요로 하므로 더 많은 감사시간이 투입된다(최 관과 백원선 1998). 따라서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을 의미하는 INVREC의 회귀계수는 양(+)의 기대부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클수록 잠재적 소송위험은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보수적인 감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수적인 감사는 결과적으로 감사시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보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외부 조달 자금이 증가할수록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주식

5) 감사보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상승의 영향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2005년의 물가로 감사보수를 표준화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및 사채 발행 조달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ISSUE와 부채비율을 의미하는 LEV를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LIQ, ROA 및 LOSS는 감사대상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나타낸다. 감사대상기업의 재무적 위험은 감사위험을 증가시켜 감사투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사대상기업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GRW는 감사대상기업의 성장이 감사투입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수입제도 하에서 감사인들은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초도감사 시 감사보수를 할인할 수 있다. 신용인 등(2007)과 박종성 등(2010)은 우리나라 감사시장에서도 초도감사보수할인 현상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초도감사를 의미하는 FIRST를 통제변수로 추가한다. 한편, 초도감사의 경우 감사대상기업과 해당 영업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사보수와 달리 감사시간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감사대상기업의 지배구조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칠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대주주지분율(LARGE)과 외국인지분율(FORN)을 모형에 추가한다(Niemi 2005). 박종일과 박찬웅(2007)은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감소하고,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LARGE와 FORN은 각각 음(-)의 회귀계수와 양(+)의 회귀계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사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직전년도의 감사의견을 의미하는 OPN을 추가하여 모형을 설정한다. 직전년도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닐 경우 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의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고 더 많은 감사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OPN은 양(+)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Knechel et al.(2007)과 감사인의 산업전문화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국현과 이지영(2010)은 감사인의 산업전문화 정도에 따라 감사보수가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연도별 예측하지 못한 시대적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설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대상기업의 직전년도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감사보수가 감사계약 단계에서 결정되며, 감사수행 과정에서는 감사보수에 대한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박종일과 박찬웅 2007). 이러한 실무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감사보수 결정모형인 모형 (2)에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감사보수(AFEE)와 독립변수의 측정시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단, 감사인의 특성과 관련한 감사인 규모(BIG4), 초도감사여부(FIRST) 등은 감사보수의 측정시점과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한다. 한편, 감사시간의 경우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연도의 재무적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기 때문

에 감사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1)의 통제변수는 당해 연도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분석표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기업이다. 분석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이며, 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추출하였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표본은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재무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표본도 제외하고 총 1,339개의 표본이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표본선정과정은 <표 1>과 같다.

- (1)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
- (2) 공시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업⁶⁾
- (3) 재무자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2000과 FN-Guide에서 입수할 수 없는 기업
- (4) 자기자본이 음(-)인 기업
- (5) 더미변수를 제외한 주요변수들이 상, 하위 1%를 벗어나는 기업

<표 1> 표본선택기준과 표본수

표본선택기준	표본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3,995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1,611)
공시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된 기업	(244)
재무자료를 TS-2000과 FN-Guide에서 입수할 수 없는 기업	(437)
자기자본이 음(-)인 기업	(13)
상, 하위 1%를 벗어나는 기업	(351)
최종표본	1,339

6) 100시간미만의 감사시간을 공시한 기업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일한 감사시간을 공시한 기업, 직전년도 감사시간에 비해 당해 연도 감사시간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1/2 이하로 감소한 기업 등은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표본에서 제외한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감사보수를 공시한 기업과 직전년도 감사보수에 비해 당해 연도 감사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1/2 이하로 감소한 기업 등도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한다.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2>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감사시간의 평균은 6.900(약 992시간)과 중위수는 6.780(약 880시간)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AFEE)의 평균은 18.183(약 7,885만원), 중위수는 18.005(약 6,599만원)의 값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변수인 계속감사기간(TENURE)의 평균은 1.153(약 3.168년)과 중위수는 1.099(약 3.001년)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계속감사기간이 평균적으로 3년의 값을 보이는 것은 감사인 유지제도에 따라 기업들이 감사인을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선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대상기업의 규모를 의미하는 SIZE의 평균은 26.291(약 2,618억 원)과 중위수는 25.987(약 1,932억 원)로 나타났다. 감사인의 규모를 의미하는 BIG4의 평균값은 0.675로 전체 표본의 약 67.5%가 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연결자회사의 수를 나타내는 CONFM의 평균은 1.177로 분석 표본들의 평균 연결자회사 수가 3.245개인 것을 알 수 있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INVREC의 평균은 0.319로 나타났으며, ISSUE와 LEV의 평균은 각각 0.177과 0.452의 값을 보이고 있다. 직전년도 감사의견을 나타내는 OPN의 평균은 0.002로 나타나 전체 표본 중 약 0.2%의 표본이 직전년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도감사기업을 의미하는 FIRST의 평균은 0.195로 전체 표본에서 약 19.5%의 감사대상기업이 감사인을 변경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N=1,339)

변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중위수	최소값
AHOUR	6.900	0.671	9.240	6.780	5.663
AFEE	18.183	0.683	20.469	18.005	16.659
TENURE	1.153	0.757	2.565	1.099	0
SIZE	26.291	1.362	30.861	25.987	23.749
BIG4	0.675	0.469	1	1	0
CONFM	1.177	1.131	5.118	1.099	0
INVREC	0.319	0.164	0.910	0.310	0
EXPT	0.298	0.317	1.000	0.154	0
ISSUE	0.177	0.136	0.991	0.135	0.013
LIQ	1.980	2.259	39.211	1.407	0.144
LEV	0.452	0.192	0.952	0.461	0.023
OPN	0.002	0.047	1	0	0
ROA	0.038	0.086	0.607	0.038	-0.430
LOSS	0.187	0.390	1	0	0
GRW	0.072	0.218	1.744	0.061	-0.977
FIRST	0.195	0.396	1	0	0
LARGE	0.394	0.169	0.916	0.393	0
FORN	0.107	0.157	0.792	0.029	0

1) 변수설명

- AHOUR :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 AFEE :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 TENURE :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연도) 자연로그 값
- SIZE : 감사대상기업의 총자산 자연로그 값
- BIG4 : 감사인이 BIG4면 1, 아니면 0
- CONFM : 연결자회사 수의 제곱근 값
- INVREC :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EXPT : 총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 ISSUE : 주식 및 사채 발행 조달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LIQ : 유동비율
- LEV : 부채비율
- OPN : 적정인 감사의견이면 0, 아니면 1
- ROA : 총자산이익률
- LOSS : 손실발생 기업이면 1, 아니면 0
- GRW : 매출액의 성장률
- FIRST : 초도감사기업이면 1, 아니면 0
- LARGE : 대주주인 지분율
- FORN : 외국인지분율

〈표 3〉 상관관계분석결과(N=1,339)

변수	AHOUR	AFFEE	TENURE	SIZE	BIG4	CONFM	INVREC	EXPT	ISSUE	LIQ	LEV	OPN	ROA	LOSS	GRW	FIRST	LARGE
AFFEE	0.706 (<.0001)																
TENURE	-0.004 (0.892)	0.082 (0.003)															
SIZE	0.682 (<.0001)	0.859 (<.0001)	-0.001 (0.977)														
BIG4	0.361 (<.0001)	0.367 (<.0001)	0.083 (0.002)	0.343 (<.0001)													
CONFM	0.504 (<.0001)	0.604 (<.0001)	-0.010 (0.709)	0.617 (<.0001)	0.153 (<.0001)												
INVREC	-0.215 (<.0001)	-0.253 (<.0001)	0.011 (0.676)	-0.320 (<.0001)	-0.027 (0.320)	-0.230 (<.0001)											
EXPT	0.099 (0.000)	0.121 (<.0001)	-0.021 (0.440)	0.128 (<.0001)	-0.021 (0.441)	0.291 (<.0001)	-0.051 (0.063)										
ISSUE	0.003 (0.921)	-0.045 (0.098)	-0.029 (0.290)	-0.146 (<.0001)	-0.057 (0.037)	-0.162 (<.0001)	0.044 (0.110)	-0.084 (0.002)									
LIQ	-0.124 (<.0001)	-0.175 (<.0001)	0.034 (0.210)	-0.118 (<.0001)	-0.054 (0.049)	-0.096 (0.000)	-0.073 (0.007)	-0.002 (0.928)	-0.072 (0.009)								
LEV	0.168 (<.0001)	0.212 (<.0001)	-0.036 (0.191)	0.176 (<.0001)	0.008 (0.761)	0.113 (<.0001)	0.106 (<.0001)	0.095 (0.001)	0.222 (<.0001)	-0.554 (<.0001)							
OPN	-0.006 (0.835)	0.001 (0.961)	-0.017 (0.531)	-0.015 (0.595)	-0.001 (0.975)	-0.030 (0.273)	-0.062 (0.022)	0.018 (0.507)	0.046 (0.090)	0.022 (0.438)	0.022 (0.419)						
ROA	0.156 (<.0001)	0.192 (<.0001)	0.042 (0.120)	0.242 (<.0001)	0.179 (<.0001)	0.132 (<.0001)	0.053 (0.053)	-0.128 (<.0001)	-0.257 (<.0001)	0.075 (0.006)	-0.287 (<.0001)	-0.125 (<.0001)					
LOSS	-0.101 (0.000)	-0.147 (<.0001)	-0.030 (0.279)	-0.202 (<.0001)	-0.129 (<.0001)	-0.101 (0.000)	-0.067 (0.015)	0.141 (<.0001)	0.222 (<.0001)	-0.054 (0.050)	0.204 (<.0001)	0.099 (0.000)	-0.665 (<.0001)				
GRW	0.089 (0.001)	0.105 (0.000)	0.010 (0.720)	0.130 (<.0001)	0.089 (0.001)	0.042 (0.121)	0.130 (<.0001)	-0.017 (0.531)	-0.069 (0.012)	-0.118 (<.0001)	0.059 (0.032)	-0.131 (<.0001)	0.252 (<.0001)	-0.193 (<.0001)			
FIRST	0.003 (0.925)	-0.048 (0.082)	-0.750 (<.0001)	-0.007 (0.811)	-0.069 (0.011)	0.021 (0.445)	0.002 (0.939)	0.012 (0.653)	0.024 (0.379)	-0.016 (0.566)	0.017 (0.536)	0.017 (0.545)	-0.021 (0.451)	0.010 (0.714)	-0.012 (0.667)		
LARGE	-0.137 (<.0001)	-0.193 (<.0001)	-0.029 (0.287)	-0.153 (<.0001)	-0.121 (<.0001)	-0.098 (0.000)	0.047 (0.087)	-0.098 (0.000)	-0.129 (<.0001)	0.055 (0.044)	-0.147 (<.0001)	-0.038 (0.162)	0.017 (0.536)	0.016 (0.551)	-0.001 (0.981)	-0.006 (0.833)	
FORN	0.381 (<.0001)	0.454 (<.0001)	0.067 (0.015)	0.491 (<.0001)	0.260 (<.0001)	0.276 (<.0001)	-0.209 (<.0001)	0.079 (0.004)	-0.162 (<.0001)	0.117 (<.0001)	-0.065 (0.017)	0.050 (0.069)	0.233 (<.0001)	-0.135 (<.0001)	0.050 (0.066)	-0.025 (0.353)	-0.145 (<.0001)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변수설명은 〈표 2〉와 동일함.

<표 3>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AHOUR와 AFEE의 상관계수는 0.706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AHOUR와 SIZE의 상관계수는 0.682이고, AFEE와 SIZE의 상관계수는 0.859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으로 감사대상기업의 규모가 매우 큰 역할을 하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계속감사기간을 의미하는 TENURE는 AHOUR과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ENURE와 AFEE는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TENURE와 감사인의 규모를 의미하는 BIG4는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대상기업이 BIG4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계속적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HOUR와 BIG4의 상관계수와 AFEE와 BIG4의 상관계수도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SIZE와 BIG4의 상관계수도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AHOUR는 CONFM, EXPT, LEV, ROA, GRW, FORN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INVREC, LIQ, LOSS, LARGE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AFEE의 경우 FIRST와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냄으로써 신용인 등(2007)의 연구결과와 같이 초도감사보수할인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⁷⁾

2. 회귀분석 결과

가. 가설 1의 회귀분석결과

<표 4>는 계속감사기간과 감사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4>의 Panel A는 전체 표본을 사용하여 가설 1을 검증한 결과이고 Panel B는 전체 표본을 감사인 유지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Panel A와 Panel B에서 모두 수정 R²가 77.0% 이상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의 Panel A를 살펴보면 TENURE의 회귀계수는 -0.047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총 표본을 감사인 유지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을 수행한다.

Panel B를 살펴보면 계속감사기간이 3년 이하인 표본에서는 TENURE의 회귀계수

7) <표 3>은 모형 (1)에 사용된 변수와 감사보수의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모형 (2)에 사용된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3>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가 유의하지 않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계속감사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감사업무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계속감사기간이 3년을 초과한 표본에서는 TENURE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계속감사기간과 감사시간⁸⁾

Panel A. 전체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N=1,339)

변 수	기대부호	회귀계수	t-값	p-값
절편		-1.197	-2.59***	0.0049
TENURE	-	-0.047	-1.57*	0.0578
SIZE	+	0.286	16.25***	<.0001
BIG4	+	0.239	7.26***	<.0001
CONFM	+	0.101	5.93***	<.0001
INVREC	+	-0.034	-0.33	0.3714
EXPT	+	-0.001	-2.79***	0.0027
ISSUE	+	0.569	5.02***	<.0001
LIQ	-	-0.005	-0.63	0.2649
LEV	+	0.165	1.64*	0.0501
OPN	+	0.056	0.18	0.4271
ROA	-	0.421	1.76**	0.0398
LOSS	+	0.088	1.79**	0.0369
GRW	+	0.004	0.05	0.4796
FIRST	+	-0.033	-0.60	0.2737
LARGE	-	0.070	0.78	0.2192
FORN	+	0.296	2.69***	0.0036
연도더미			포함	
산업더미			포함	
수정 R ²			0.770	
F-Value			82.84***	

8) 가설 1을 단측검증의 대립가설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표 4>에서 단측검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Panel B. 전체 표본을 3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분 류		계속감사기간이 3년 이하인 표본(N=713)			계속감사기간이 3년을 초과한 표본(N=626)		
변 수	기대부호	회귀계수	t-값	p-값	회귀계수	t-값	p-값
절편		-3.414	-8.52***	<.0001	0.866	0.96	0.1694
TENURE	-	0.045	0.59	0.2766	-0.178	-2.19**	0.0144
SIZE	+	0.378	24.55***	<.0001	0.203	6.13***	<.0001
BIG4	+	0.155	5.46***	<.0001	0.298	4.83***	<.0001
CONFM	+	0.094	6.27***	<.0001	0.097	3.06***	0.0012
INVREC	+	0.159	1.86**	0.0316	-0.347	-1.75**	0.0401
EXPT	+	-0.001	-1.89**	0.0297	-0.002	-1.62*	0.0527
ISSUE	+	0.536	5.63***	<.0001	0.638	2.89***	0.0020
LIQ	-	-0.015	-2.32**	0.0102	0.005	0.35	0.3639
LEV	+	-0.028	-0.33	0.3692	0.480	2.33**	0.0101
OPN	+	-0.031	-0.13	0.4466	0.350	0.52	0.3013
ROA	-	-0.261	-1.27	0.1024	1.231	2.57***	0.0052
LOSS	+	0.024	0.57	0.2828	0.139	1.49*	0.0686
GRW	+	-0.040	-0.71	0.2400	0.007	0.04	0.4829
FIRST	+	0.061	0.86	0.1950			
LARGE	-	-0.042	-0.56	0.2869	0.293	1.62*	0.0530
FORN	+	0.034	0.33	0.3702	0.530	2.78***	0.0030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수정 R ²			0.774			0.777	
F-Value			79.79***			78.24***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설명은 <표 2>와 같음.

따라서 계속감사를 통한 감사품질의 향상이 감사업무의 효율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nel A에서 TENURE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 이유가 계속감사기간이 3년을 초과한 표본의 분석결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1에 대한 검증결과는 계속감사기간이 감사인 유지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을 초과할 경우 감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이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TENURE를 제외한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를 의미하는 SIZE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기에 기업규모가 감사시간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BIG4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BIG4 감사인의 경우 우수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Non-BIG4 감사인에 비하여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자회사 수를 의미하는 CONFM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연결자회사가 많을수록 감사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

기업의 높은 ROA는 기업실패위험을 감소시켜 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투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분석결과는 오히려 감사투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높은 ROA의 원인에 해당하는 매출액, 매출채권, 재고자산 변동 등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감사투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가설 2의 회귀분석결과

<표 5>는 가설 2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표 5>의 Panel A는 전체 표본을 사용하여 가설 2를 검증한 결과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변수인 TENURE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가설 2가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의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축적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인은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품질의 향상에 대한 대가로서 추가적인 감사보수를 감사대상기업에 청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수임제도 하에서 감사인 교체제도는 회계법인 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회계법인은 감사인을 교체할 의무가 있는 기업을 새로운 감사대상기업으로 유치하게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는 과도한 초도감사 보수할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9) <표 3>에서 AHOUR과 EXPT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가운데 기업규모(SIZE)와 EXPT가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의 결과에서 EXPT가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은 감사시간에 대한 기업규모의 효과가 SIZE에 포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SIZE의 영향을 통제하고 부분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EXPT는 AHOUR와 유의하지 않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계속감사기간과 감사보수¹⁰⁾

Panel A. 전체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N=1,339)

변 수	기대부호	회귀계수	t-값	p-값
절편		7.795	26.86***	<.0001
TENURE	+/-	0.083	4.47***	<.0001
SIZE	+	0.379	34.31***	<.0001
BIG4	+	0.117	5.74***	<.0001
CONFM	+	0.076	7.13***	<.0001
INVREC	+	0.060	1.01	0.3119
EXPT	+	-0.001	-2.88***	0.0041
ISSUE	+	0.276	4.60***	<.0001
LIQ	-	-0.017	-3.88***	0.0001
LEV	+	0.127	2.23**	0.0258
OPN	+	0.270	1.83*	0.0671
ROA	-	0.284	2.85***	0.0045
LOSS	+	0.042	1.50	0.1340
GRW	+	0.009	0.35	0.7238
FIRST	-	0.045	1.31	0.1889
LARGE	-	-0.087	-1.55	0.1217
FORN	+	0.202	2.99***	0.0028
연도더미			포함	
산업더미			포함	
수정 R ²			0.783	
F-Value			92.48***	

10) 가설 2를 양측검증의 대립가설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표 5>에서 양측검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Panel B. 전체 표본을 3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분 류		계속감사기간이 3년 이하인 표본(N=713)			계속감사기간이 3년을 초과한 표본(N=626)		
변 수	기대부호	회귀계수	t-값	p-값	회귀계수	t-값	p-값
절편		7.808	19.08***	<.0001	7.625	17.77***	<.0001
TENURE	+/-	0.027	0.35	0.7253	0.097	2.57**	0.0105
SIZE	+	0.382	24.37***	<.0001	0.381	24.21***	<.0001
BIG4	+	0.080	2.75***	0.0061	0.152	5.33***	<.0001
CONFM	+	0.080	5.22***	<.0001	0.069	4.71***	<.0001
INVREC	+	0.104	1.31	0.1915	-0.022	-0.24	0.8142
EXPT	+	-0.001	-2.39**	0.0171	-0.001	-1.47	0.1426
ISSUE	+	0.382	4.37***	<.0001	0.148	1.80*	0.0732
LIQ	-	-0.024	-4.41***	<.0001	-0.007	-0.95	0.3425
LEV	+	0.096	1.25	0.2103	0.215	2.38**	0.0178
OPN	+	0.464	2.33**	0.0200	-0.013	-0.06	0.9527
ROA	-	0.372	2.80***	0.0053	0.369	2.15**	0.0318
LOSS	+	0.025	0.66	0.5125	0.076	1.82*	0.0693
GRW	+	0.020	0.64	0.5193	-0.043	-0.72	0.4748
FIRST	-	-0.008	-0.10	0.9178			
LARGE	-	-0.036	-0.46	0.6425	-0.139	-1.65*	0.0996
FORN	+	0.116	1.10	0.2702	0.244	2.77***	0.0058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수정 R ²		0.773			0.803		
F-Value		79.09***			82.93***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설명은 <표 2>와 같음.

이러한 과도한 초도감사보수할인은 감사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Panel A에서 TENURE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인다는 것은 계속감사기간 동안 감사품질이 향상된 상황에서 감사인이 감사보수의 증가를 통해 초도감사보수 할인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려는 유인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Panel B는 계속감사기간을 감사인 유지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을 기준으로 표본을 분류하여 모형 (2)를 분석한 결과이다. 계속감사기간이 3년 이하인 표본에서는 TENURE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유지제

도가 규정하고 있는 3년 동안은 감사보수를 높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계속감사기간이 3년을 초과한 표본에서는 TENURE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TENURE를 제외한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 감사인의 규모(BIG4), 연결자회사의 수(CONFM), 주식 및 사채 발행 조달액(ISSUE), 부채비율(LEV), 외국인지분율(FORN) 등의 회귀계수가 모두 기대방향과 동일하게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초도감사보수의 할인을 살펴보기 위한 FIRST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값을 보이고 있다. 감사기간에 따른 감사보수의 영향이 TENURE의 회귀계수에 포착됨으로서 FIRST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¹¹⁾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시간의 경우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한편, 감사보수의 경우 계속감사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감사인 유지제도가 규정한 3년을 초과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초도감사보수할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사인이 계속감사로 인한 적격성 즉, 감사품질의 향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유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감사인 교체제도는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 간 경제적 유착방지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계속감사를 통한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훼손시킨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2월에 개정된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동일 감사인이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제도가 폐지되는 시점에서 계속감사기간에 따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3년을 초과할수록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사보수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11) <표 5>의 분석에서 TENURE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FIRST의 회귀계수가 -0.070으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도감사보수할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사인이 계속감사로 인한 적격성 즉, 감사품질의 향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유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투입시간이라는 직접적인 측정치를 사용하여 계속감사의 효율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계속감사로 감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인 교체제도 폐지의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업무의 효율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보수를 주제로 수행되는 후속연구들과 관련정책을 결정하는 정부기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동일 회계법인 내의 이사와 보조자 교체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주권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하여 동일 회계법인 내의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4년 연속 계속감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동일 보조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업무를 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는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감사시간의 경우 신뢰성에 대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감사시간의 경우 신중히 판단하여 표본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선정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참고 문 헌 】

- 박종성 · 김성환 · 조은혜, “감사인 교체와 초도감사 보수할인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2010, pp.103-132.
- 박종성 · 손성규 · 오원정, “계속감사기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 연구』 제39호, 2003, pp.243-267.
- 박종일 · 박찬웅,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이 비정상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 연구』 제45호, 2007, pp.119-159.
- 신용인 · 최 관 · 조현우,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2권 제1호, 2007, pp.173-207.
- 임영덕, “계속 감사기간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1권 제3호, 2006, pp.183-213.
- 지현미 · 문상혁, “소송위험이 감사시간과 감사인의 보수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 연구』 제43호, 2006, pp.311-336.
- 최 관 · 박종일 · 최성호, “계속감사기간과 자본시장의 반응”, 『회계학연구』 제35권 제1호, 2010, pp.1-36.
- 최 관 · 백원선,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 연구』 제23권 제2호, 1998, pp.49-75.
- 최국현 · 이지영, “감사인의 산업전문화와 감사보수의 결정”, 『회계연구』 제15권 제2호, 2010, pp. 219-251.
- Bedard, J. C. and K. M. Johnstone, “Audit Partner Tenure and Audit Planning and Pricing”,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 29 No. 2, 2010, pp.45-70.
- Davis, L. R., B. Soo, and G. Trompeter, “Auditor Tenure, Auditor Independence and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Boston College, 2000.
- DeAngelo, L. E., “Auditor Independence, “Low-Balling” and Disclosure Reg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 No. 2, 1981, pp.113-127.
- DeFond, M. L., and K. R. Subramanyam,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5 No. 1, 1998, pp.35-67.
- Geiger M., and K. Raghunandan, “Auditor Tenure and Audit Qual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 21 No. 1, 2002, pp.187-196.
- Ghoch, A. and R. Pawlewicz, “The Impact of Regulation on Auditor Fees: Evidence from the Sarbanes-Oxley Act”,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 28 No. 2, 2009, pp.171-197.

- Ghosh, A., and D. Moon, "Auditor Tenure and Perceptions of Audit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Vol. 80 No. 2, 2005, pp.585-613.
- Gul, F. A., B. L. Jaggi, and G. V. Krishnan, "Auditor Independence: Evidence on the Joint Effects of Auditor Tenure and Nonaudit Fe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 26 No. 2, 2007, pp.117-142.
- Johnson, V. E., I. K. Khurana, and J. K. Reynolds, "Audit-Firm Tenure and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19 No. 4, 2002, pp.637-660.
- Jonestone, K. M., M. H. Hutton, and T. D. Warfield,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Independence Risk: Framework for Analysis", *Accounting Horizons* Vol. 15 No. 1, 2001, pp.1-18.
- Knechel, W. R., V. Naiker, and G. Pacheco, "Does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Matter? Evidence from Market Reaction to Auditor Switch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 26 No. 1, 2007, pp.19-45.
- Myers, J. N., L. A. Myers, and T. C. Omer, "Exploring the Term of Auditor-Client Relationship and the Quality of Earnings: A Case for Mandatory Auditor Rotation?", *The Accounting Review* Vol. 78 No. 3, 2003, pp.779-799.
- Niemi, L., "Audit Effort and Fees under Concentrated Client Ownership: Evidence from Four International Audit Firm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Vol. 40 No. 4, 2005, pp.303-323.
- Simons, D., "Independence, Low Balling and Learning Effect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annheim, 2000.

The Effect of Audit Tenure on Audit Hours and Audit Fees

Lee, Myung Gon* / Chang, Seok Jin** / Cho, Han Seok***

ABSTRACT

Absence of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has caused committing financial reporting fraud, therefore discussions that address the independence with respect to auditors have started to mitigate it. In Korea, the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has been introduced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However, the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decreases the efficiency of audit due to discontinuance of audit tenure. Accordingly, regulations have revised as of February 2010 in order that public corporations could appoint the same auditor for 6 business year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In this context, we examines whether audit hours and audit fees are associated with audit tenure. To be concrete,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continuance of audit tenure has created the efficiency of audit by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hours and audit tenure, and audit fees and audit tenure.

We expect that the efficiency of audit along with audit tenure will reduce audit hours. However, audit fees are expected to show positive or negative direction along with audit tenure. If audit hours are decreased by the efficiency of audit, audit fees may decrease when audit tenure is longer. On the other hand, audit fees may increase for auditors to be compensated on improved audit quality along with audit tenure.

The results show that audit hours decrease when audit tenure is longer than 3 years. In particular, the efficiency of audit increases when audit is carried out for 3 years and over. On the other hand, audit fees increase when audit tenure is longer. Under the Low Balling circumstance, this result comes from charging a higher audit fees as a compensation for the higher audit quality due to audit tenure.

This study implies that the efficiency of audit is analyzed with a direct measurement, that is, the real time spent in audit. The results show that the abolition of the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increases the efficiency of audit.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efficiency of audit is not reflected to audit fees, which is expected to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follow-up studie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audit fees. Also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have implications for government organizations to decide on relevant policies.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primary author), E-mail : leemg@hanyang.ac.kr

** Master and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ccounting, Hanyang University(co-author), E-mail : seokjin3@hanyang.ac.k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ccounting, Hanyang University(co-author), E-mail : hanseokcho@hanyang.ac.kr

This study has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is study does not consider possibilities that the rotation of partners and audit assistants within the same audit firm could influence audit hours. For public companies in the Korea stock market, the same partner can not carry out audit on the same firm for 3 years and over. For the audit assistants, it is required that over two-third of the same audit assistants is to be rotated when audit is carried out for 3 years and over. Thus the results may be biased because these possibilities are uncontrolled. Second, audit hours disclosed in the annual report are controversial on the reliability. Although we pay attention to select samples of audit hours, sample selection bias may occur in the results.

Key Words : Audit Tenure, Audit Hour, Audit Fee,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